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근거 마련〉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5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5. 13.

다. 회부연월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u>제125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의 설치)</u>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

	<u>권 침해 및 고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

「출입국관리법」은 계절적 특성(파종기·수확기 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계절근로자는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배정심사협의회²⁾에서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 근로자 총 인원수 범위 내에서 도입할 수 있으며, ①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②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2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③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 ④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함³⁾.

1) 참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5년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실시한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2)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연 2회)

【계절근로 프로그램 절차】



계절근로 제도는 대상자의 국내체류 여부에 따라 국내운영방식과 해외유치방식으로 구분되며, 국내운영방식은 ①농·어가 개인, 조합·법인 직접운영 방식, ②공공형 사업운영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운영 방식은 지자체에서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유치한 계절근로자를 농·어가 및 조합·법인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이며, 공공형 사업 운영방식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수행 기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

3) 참고로, 계절근로를 목적의 비자(E-8)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5개월 이내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근로계약 연장 시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함.

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후 요청 농가에 노동력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또한, 해외유치방식은 ①외국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방식과 ②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초청 방식 ③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으로 구분되며, 업무협약 체결 방식은 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 기초지자체가 해당 외국 지자체 주민을 추천하는 방식이며,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초청 방식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친척을 추천하는 방식임. 또한 유학생의 부모 초청 방식은 유학(D-2) 자격 소지자가 연령(55세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한 부모를 추천하는 방식임.

2026년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42개 지방자치단체의 2만 8천여 농·어가에 109,100명을 배정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배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2년~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현황>

(단위: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19,718	40,647	67,778	95,596	109,100

※자료: 법무부

<2026년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규모>

(단위: 명)

지자체	농업	어업	합계
전라남도	15,214	5,880	21,094
충청남도	13,654	644	14,298
경상북도	13,796	0	13,796
전라북도	11,920	18	11,938
강원도	10,409	37	10,446
경상남도	8,246	87	8,333
경기도	6,540	0	6,540
충청북도	6,008	0	6,008
제주특별자치시	1,210	0	1,210
대구광역시	255	0	255
세종특별자치시	91	0	91
인천광역시	32	0	32
부산광역시	0	59	59
울산광역시	0	0	0
총 계	87,375	6,725	94,100

※예비 탄력분 1.5만명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임금착취 및 브로커 문제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전담기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⁵⁾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타 업무와 함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계절근로자의 운영·지원, 인력수급, 인권침해 및 고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상북도 성주군(농촌인력지원단), 경상남도 거창군(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 충청북도 괴산군(농촌활력팀), 전라북도 완주군(농촌인력지원 전담팀), 전라북도 고창군(외국인 계절근로 관리 전담팀), 충청북도 음성군(농촌인력팀) 등에서는 계절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다만, 특정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

4) 계절근로자 ‘브로커’ 키우는 대한민국, 시사in, 전다현, 2026.4.22., 계절근로자 선발 맡겼더니…임금서 12억 챙긴 브로커, 세계일보, 배상철, 2026. 4. 30., “매달 62만원 뜯겼다”…‘공공형’ 계절근로자도 브로커 논란, 중앙일보, 이영근, 2024. 10. 30.

5) 계절근로자·중개인 둘러싸고 잡음...전담기관설치가 해법, 농민신문, 김해대, 2024. 10. 30.

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현행법의 체계와 목적⁶⁾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를 인건비 등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⁷⁾하고 있으므로,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법률상 설치 근거를 두는 실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전담부서에 대한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34